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068
----------	-------

발의연월일 : 2026. 9. 3.

발 의 자 : 오기형 · 이훈기 · 김남근
임미애 · 강준현 · 박해철
이광희 · 박홍배 · 이재강
전진숙 · 박선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외부 경영규율장치로서 인수합병(M&A) 시장 역시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우리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실제로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기업 중 약 69%에 해당하는 기업(2025년말 기준)이 PBR 1배 미만으로 거래되고 있는바, 이는 미국 약 20%, 일본 약 36% 대비 저평가기업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수준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기업 본질가치 대비 현저하게 저평가가 지속되는 상장회사에 대하여 경쟁사 또는 사모펀드 등이 공개적으로 인수 제안을 하며, 대상회사의 이사회는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M&A 제안에 대해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선행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하기 위해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독립적이고 전문적

인 절차를 거쳐 찬성, 반대 등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논의 경과와 찬반 사유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요구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인수 제안에 대한 이사회 의의견표명과 정보 공시에 대해 아무런 법적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음.

이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한 「상법」 개정 에 따라 우리나라 상장회사도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수 제안에 대해 이사회가 제안의 접수 내용과 향후 검토 계획을 즉시 주요사항 보고서로 공시하도록 하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절차를 거친 판단 결과를 논의 경과 및 사유를 포함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및 공개매수에 대한 의의견표명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M&A 과정에서 이사회 의 책임과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주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기업가치 제고 및 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의 저평가 해소를 통한 자본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38조제1항 및 제161조제1항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개매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제161조제1항제10호 중 “그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를 “그 법인의 주주·경영·재산 등에”로 한다.

제449조제1항에 제3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의2. 제13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을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8조(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①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제138조(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① ----- ----- ----- ----- ----- <u>. 다만,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개매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까지, 제9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 날과 납입기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① ----- ----- ----- ----- ----- ----- ----- -----

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1. ~ 9. (생략) 10. 그 밖에 <u>그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u>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② ~ ⑤ (생략)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8. (생략) <u><신설></u> 39. ~ 49. (생략) ② ~ ④ (생략)	----- ----- ----- ----- ----- 1. ~ 9. (현행과 같음) 10. ----- <u>그 법인의 주주·경영·재산 등에</u>-----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49조(과태료) ① ----- ----- ----- ----- 1. ~ 38. (현행과 같음) <u>38의2. 제13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을 하지 아니한 자</u> 38. ~ 4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